

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·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선영 환경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경제·사회·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제정(2022. 1. 4. 제정, 2022. 7. 5. 시행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
- 기존 환경 중심의 ‘지방의제21’ 체계에서 경제·사회·환경을 포괄하는 ‘지속 가능발전’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을 재정립함
- 인용 조문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과 민·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기존 장 일괄 삭제 (제1장~제5장)
- 조문의 구성을 정비하여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~제7조를 제2조~제6조로, 제9조를 제7조로, 제10조를 제9조로 정리(안 제2조~제7조, 제9조)
-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자구 정비 (안 제1~2조, 제7조, 제9조, 제11~12조, 제16조, 제20조)
- 시장의 책무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구체화 및 조문 정비 (안 제3조)

-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강행 규정(주민·기업의 책무) 정비 (안 제4조)
- 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 및 기능 정비 (안 제5조)
- 위원 구성 및 규모와 특정 성별 비율 제한 명시 (안 제6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- 관련부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협조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 단서 신설 (안 제15조)
- “지방의제21”을 “지속가능발전”으로 자구 수정 (안 제17조)
-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조문 정비 (안 제18조)
-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(안 제19조)
- 중복된 제21조(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)와 불필요한 일반적인 위임규정인 제22조(시행규칙) 삭제

다. 관련법령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정희)

○ 본 조례안은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은 경제·사회·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, 포용적 사회 및 기후·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또한, 같은 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, 제5조에서는 국민과 사업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 재정립,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예산지원과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협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됨.
- 검토 결과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